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58
----------	-------

발의연월일 : 2026. 2. 9.

발 의 자 : 강대식 · 강선영 · 김기현
성일종 · 구자근 · 박덕흠
안철수 · 신동욱 · 이만희
김민전 의원(10인)

제안이유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여 군인 건강 향상을 위하여 「군급식기본법」이 2025년 7월 제정되어 2026년 1월 시행됨.

그런데 전군 군급식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는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 납품규정을 실효성 있게 변경하고, 영양사를 각군 부대에 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 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 납품규정, 각군 부대의 영양사 배치 등 군급식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여 군인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군급식에 관한 계획,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각군 부대의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
- 나. 국방부 및 대규모 급식인원이 있는 부대 등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이 우선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안 제7조제3항).
- 다. 각군 부대에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급식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수립·시행”을 “제5조의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전군(全軍) 군급식 위원회와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둔다”를 “전군 군급식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계획
 2. 군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군급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0조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 등 각군 부대의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둔다.

제7조제3항 중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이 우선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영양관리기준은 국방부장관이”를 “영양관리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각군 부대의 기준은 국방부령으로”로 한다.

② 각군 부대에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제2항”을 “제8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가의 임무) ① (생 략)	제3조(국가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 국방부장관은 매년 군급식 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② ----- -----제5조의 전군 (全軍) 군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
제5조(군급식위원회) ① 국방부장 관은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와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 원회를 둔다.	제5조(군급식위원회) ① ----- ----- ----다음 각 호의 사항----- 전군 군급식위원회를 둔다.
<신 설>	1. 제3조제2항에 따른 군급식에 <u>관한 계획</u>
<신 설>	2. 군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제 <u>도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u> <u>사항</u>
<신 설>	3. 제12조에 따른 군급식 실태 <u>조사에 관한 사항</u>
<신 설>	4. 그 밖에 군급식의 운영 및 <u>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방</u> <u>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u> <u>는 사항</u>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식재료) ① · ② (생 략)

③ 국방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부대 및 대규모 급식인원이 있는 부대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8조(영양관리) ① (생 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의 영

② 제10조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 등 각군 부대의 군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 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

-----.

제7조(식재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이 우선적으로 납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영양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각군 부대에 영양사를 둘 수 있다.

③ -----영

<u>양관리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u> 제11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생 략) ② 각군 부대의 장과 그 소속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u>제8조제2항</u>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생·안전관리 기준 2. (생 략) ③ · ④ (생 략)	<u>양관리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각군 부대의 기준은 국방부령으로-----.</u> 제11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u>제8조제3항</u> ----- -----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